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2021년도 ‘대구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브랜드개발 지원)

대구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2021년도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브랜드개발 지원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추진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1. 사 업 명 : 2021년도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지원사업’

2. 지 원 명 :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브랜드개발 지원

3. 추진목적

-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디자인 지원을 통한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확보
- 브랜드개발 지원 : 상품 브랜드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상품 인지도 증대

4. 지원내용

세부지원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자체 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대구지역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지원	자체 상품의 브랜드 개발	

5. 세부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제품디자인개발 지원	브랜드개발 지원
지원대상 (수혜기업)	대구지역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기준) / <u>업력제한 없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상품 출시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업(과제) · 최근 3년 이내(2018.01.01~현재) 지식재산권 취득한 기업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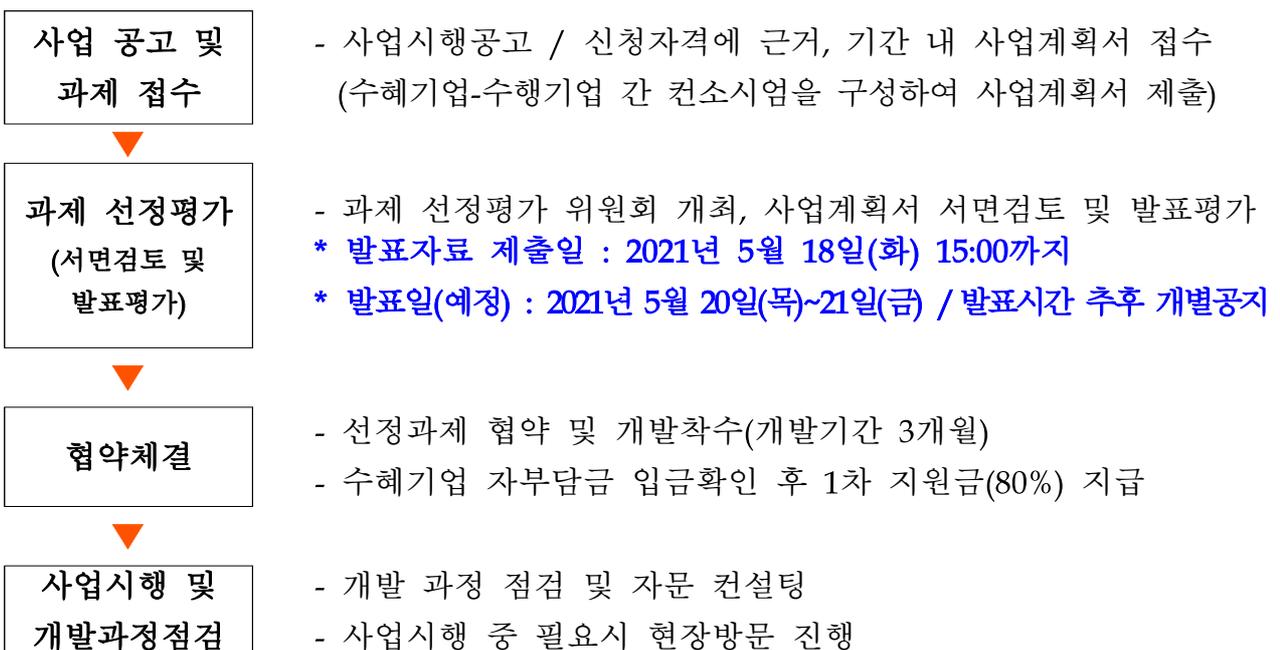
개발수행 (수행기업)	<u>디자인전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소지 기업)</u>	
지원범위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3D랜더링 확정안 및 제작사양, 디자인목업제작, 디자인출원 등) ※우수과제 1개 기업 시금형 제작비 지원 / 45,000천원 내외(수혜기업 자부담금 10%)	기업 보유상품/서비스에 대한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브랜드 적용 서식류 외 활용안 6종 이상, 인쇄사양, 브랜드 매뉴얼, 상표출원 등) ※우수과제 4개 기업 비즈니스프로모션 (홍보매체 마케팅) 지원 / 5,000천원 내외
개발기간	3개월	
지원금액	기업(과제)당 최대 33,750천원 지원	기업(과제)당 최대 24,750천원 지원
지원건수	8건 내외	11건 내외
지원비율	총개발비용의 90% 지원(수혜기업 자부담금 10%)	
신청방법	수혜·수행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1개 과제로 공동 신청	
기 간	모집 : 2021년 4월 19일(월) ~ 2021년 5월 10일(월) 온라인접수 :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5월 10일(월) / 23:59까지 서류접수 : 2021년 5월 11일(화)~12일(수) / 17:00까지(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금액 및 지원건수는 평가결과 및 예산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기업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고자 자부담금 10%로 경감

6. 세부사업별 추진절차

가) 제품디자인개발지원



▼

결과평가

-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평가 시행(미흡과제는 수정·보완을 거쳐 재평가)
- 완료 과제에 한해 2차 지원금(20%) 지급
- 결과평가 우수과제 1개 기업 시금형 제작 연계지원

▼

디자인출원 및
결과물활용

-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 수혜기업의 개발 결과물 활용
- 지원 결과물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사업 진행 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상의 변경(지원금 지급 시점 등) 또는 생략 가능

나) 브랜드개발지원

사업 공고 및
과제 접수

- 사업시행공고 / 신청자격에 근거, 기간 내 사업계획서 접수
(수혜기업-수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과제 선정평가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과제 선정평가 위원회 개최,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 * 발표자료 제출일 : 2021년 5월 18일(화) 15:00까지
- * 발표일(예정) : 2021년 5월 20일(목)~21일(금) / 발표시간 추후 개별 공지

▼

협약체결

- 선정과제 협약 및 개발착수(개발기간 3개월)
- 수혜기업 자부담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80%) 지급

▼

사업시행 및
개발과정점검

- 개발 과정 점검 및 자문 컨설팅
- 사업시행 중 필요시 현장방문 진행

▼

결과평가

-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평가 시행(미흡과제는 수정·보완을 거쳐 재평가)
- 완료 과제에 한해 2차 지원금(20%) 지급
- 결과평가 우수과제 4개 기업 비즈니스 프로모션 지원

▼

상표출원 및
결과물활용

-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 수혜기업의 개발 결과물 활용
- 지원 결과물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조사

※사업 진행 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상의 변경(지원금 지급 시점 등) 또는 생략 가능

7.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개발, 활용, 사업화 계획에 대한 PT 발표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상품성	- 수혜기업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상품경쟁력, 시장 규모	20점
수행능력	- 수행기업의 인력, 업력, 개발능력 등 전문성 확보여부	20점
계획성	- 디자인개발계획의 적정성과 명확성 - 시장(기술)동향 파악 수준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 디자인 활용계획(적용, 양산·시장출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구체성	25점
사업화 가능성	- 재무여건 대비 개발 타당성 및 상품화 가능성	20점
기대효과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성장성	10점

- 가점 및 우대사항

구분	가점 및 우대사항	점수
수혜기업	최근 3년 이내(2018.01.01~현재)에 지식재산권 취득한 경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등록(상표 출원 불인정) 등 관련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제품 기술력 및 차별성 입증)	해당 시 3점
수행기업	최근 3년 이내(2018.01.01~현재) 우수디자인어워드(아래 기준) 선정 기업이 수행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 국내외 디자인어워드* 우수디자인선정 기업 * 국내 :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디자인상품(GD) 선정 기업 * 국외 : IF(독일), Red Dot(독일), IDEA(미국), G-Mark(일본)에 한함	해당 시 2점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수혜기업	수행기업
참고사항	<p>※ 선정 평가 시 노트북 활용 예정으로 필수구비 및 별도구비 서류 출력본은 1부씩 제출</p> <p>※ 공동구비 및 별도구비서류 데이터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제출</p>	
공동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제출 최종 확인서 및 접수확인증 1부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 사업자 등록증(당해년도 발급분) 사본 1부 - 최근 2년간('19년~' 20년) 재무제표 각 1부 ('20년도 추정재무제표 제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우대사항 확인서 1부 - 사전제외대상 협약서 1부 - 제출서류 첨부 USB 1개 (사업계획서 hwp파일 및 모든 제출서류 스캔본 첨부)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 '디자인지원정보포털(ds.dgdc.or.kr)' 신청서 출력 후 직인 날인 必 	

별도 구비	필수	-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사본 1부
	해당 기업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등록 등 관련 지식재산권(출원 불인정) - 기업인증(ex. 이노비즈기업, 스타기업, 월드클래스300 등) 및 수상, 실적 증빙서류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 우수디자인어워드 증빙서류 (3년 이내 실적만 인정)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완료 후, 우편 또는 디자인센터 방문 제출 - 주소 : (701-824)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신천동)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2F ※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접수여부 확인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신청 가이드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주소 : ds.dgdc.or.kr - 발표(PT)자료 온·오프라인 제출 : 2021년 5월 18일(화)15:00 까지 (제출기한 엄수) * 온라인 : PDF파일(e.mail) / kdj923@dgdc.or.kr - 발표평가 예정일자 : 2021년 5월 20일(목)-21일(금) / 발표시간 추후 개별 공지	

9. 유의사항

9-1.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수혜기업, 수행기업, 수혜기업의 장, 수행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수행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9-2.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수혜기업, 수행기업, 수혜기업의 장, 수행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10. 참고사항

- 모든 신청과제의 제안서에 ‘개발 후 상용화 계획(일정 포함)’을 포함시킬 것 (※상용화 가능성 및 계획의 구체성 ‘의 중점 평가)
-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선정된 수혜기업의 경우는 면밀하게 검토 후 선정
- 최근 2년간 연속으로 동일분야에 선정된 수혜기업은 신청 불가 (분야 예시 : 제품, 브랜드, 토털 등)
- 개발지원금은 수행기업에 지급하며, 부가가치세는 총개발비(지원금+자부담금)의 10%로 하고, 수혜기업 부담으로 함
- 지원 후 1년 이내 상품화 실패 시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할 수 있음
- 선정과제의 지원범위는 과제 특성 및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 개발범위 외 별도 개발은 본 사업 협약 내용과 관련이 없으며, 수혜기업과 수행기업 간 해결사항임
- 적격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신청과제 접수현황에 따라 연장 공고 또는 추가모집 진행 가능)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 주류유통·판매업(제조업은 신청 가능), 숙박업 등)

